만약 당신이 차별당했다고 느끼신다면:

- 1. 차별을 한 고용주, 매니저, 간부, 인사과, 건물주 혹은 사업주에게 상황을 알리십시오. 또 그들에게 차별적 행위는 하워드 카운티법률 위반임을 말하십시오.
- 2. 서면 항의문을 보내고, 사본을 보관하십시오.
- 3. 차별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일을날짜, 시간과 함께 기록하십시오. 모든 서한의 사본과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보관하십시오.
- 4. 하워드 카운티 인권사무소(410-313-6430)에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접수하십시오. 주택 관련 민원은 일년, 다른 신고는 6개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.



하워드 카운티 인권국

인권국 9820 Patuxent Woods Drive Suite 237 Columbia, MD 21046 Phone: Office (410) 313-6430 (410) 313-6468 (fax) (Voice/Relay)

https://www.howardcountymd. gov/Departments/County-Administration/Human-Rights

Office Hours:

Monday – Friday 8:00 a.m.-5:00 p.m.

Calvin Ball, County Executive Yolanda F. Sonnier, Administrator

Korean Translation Updated 5/28/20

Discrimination is Illegal in Howard County

하워드 카운티에서 차별은 불법입니다



Office of Human Rights 인권사무소)

8

Human Rights Commission (인권위원회)







카운티법

하워드 카운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별은 불법입니다:

- 인종
- 피부색
- 신념
- 국적
- 소득
- 가족 상태
- 성별
- 직업
- 종교
- 정치 견해
- 외모
- 장애
- 나이
- 혼인 여부
- 성적 지향
- 성정체성

카운티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곳에서 차별은 불법입니다:

• 직장

업무 배당, 고용, 해고, 승진, 월급, 사규, 견습기간, 트레이닝 프로그램, 차별에 대한 항의로 인한 불이익, 괴롭힘, 휴직, 휴가 및 그 외의 특혜.

• 주택

주택 매매 또는 임대, 재임대, 관리를 할 때 차별은 불법입니다.

• 대출

대출기관이 융자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, 융자 거부 혹은 융자에서 다른 기간 및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또한 기본권을 가진 개인에게 위협이나 간섭, 협박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.

• 공공시설

공공시설을 차별로 인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그 시설이 비영리단체에 속하여 있어도 수익을 위해 세워진 시설과 같이 이용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. 공공시설에는 호텔, 식당, 가게, 병원, 의료단체 그리고 헬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• 법률집행

어떠한 법 집행관도 직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거나 괴롭히거나, 개인의 존엄성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예외:

- 1. 직원 5명 미만 업체
- 2. 고용주가 특정 사업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적절한 선의 직업 자격 (BFOQ)을 입증하는 경우
- 3. 부동산, 중개인, 또는 광고를 사용하지 않은 주택 매매 또는 거래
- 4. 한 개의 임대 유닛만 가진 주택 혹은 건물 소유주;
- 5. 공공장소는 특정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 소유 또는 비공개 클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6. 일부 종교 기관



사명 (MISSION):

하위드 카운티 인권국은 카운티에서 차별을 근절하고, 균등한 기회를 늘리며,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려는 하위드 카운티 정부기관입니다.